

【토론 1】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고 미진

Ko Mi Jin, A/B/A 법률사무소

I. 머리말

농촌은 우리 모두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 농촌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유해한 먹거리에 대응해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식량공급원이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 나가고 보존해 가는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에 종사하는 절반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농업구조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업인은 단지 남성농업인의 보조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농업분야의 기간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정의 핵심대상임에 틀림없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농업관련 법체계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와 권리향상의 필요성

1. 농업의 구조변화

현재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과 ‘여성의 농업노동투하율’이 전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농업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고,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채소·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대다수 여성농업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아가 농업경영은 현재 시장 지향적인 상업영농체제로 전환하면서 전문화·규모화 되고 있고, 단순 생산에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정보와 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도 정보화에 달려 있다.

농업경영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도 전통적인 농업보조자에서 농업의 주도적인 생산자로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2. 소결

따라서 현행 법규가 기존의 일반 남성위주의 농업경영주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 주류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여성 농업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 중 약 50% 이상을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성농업인(약 80% 이상)의 법적지위는 단순히 ‘주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농업·농촌문제’와 ‘여성문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위 두 가지 측면인 ‘농촌’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한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업법 체계를 농업경영조직법, 농업자원법, 농업생산 가공 및 유통법, 식품안전법 등으로 구분할 때,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행정영역의 기본적 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개별 농업법의 구체적 적용을 지도하는 지위를 갖는다.

또한 특별법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를 보면,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 대통령령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는 농업인의 기준이,

1. 1천제곱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부부 재산 소유에 관한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조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여성의 명의로 일정기준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명의의 통장에 연간 100만원 이상의 판매액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가부장적인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농촌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최근에는 부부재산 취득시에 부부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결혼 중 취득한 부부공동의 재산은

반드시 부부공동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서는 위 시행령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농업인’으로 받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 점이 바로 현행법 체계내에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농업·농촌의 문제 외에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는 농촌의 가부장제적인 전통과 관련하여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와 관련한 문제점은, 종사사실인 증절차의 미비라는 점에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90% 이상에 이르지만, 종사실 인증절차의 미비로 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인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로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제외, 정책자금 수혜에서 제외, 전직시 농업종사경력 인정 못받음, 신용대출의 접근 제한, 교통사고나 재해 등에 따른 보상시 직업인으로서 농업인 아닌 농촌주부로만 평가 등)

IV. 맷음 말

농업·농촌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농업인 정의 조항은 농업정책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본적 조항이므로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보장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비교법적 검토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하거나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지위인정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농업인의 절반인 여성농업인 없이는 우리 농업인의 발전이란 불가능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청·장년층 여성의 농촌정주를 기피케 만들게 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국가의도·농간의 균형 있는 발전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

시장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의 하나는 여성 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